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571호

이 시행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7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2020. 1. 1.이후 도서관 관리 및 운영을 중구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 마련 및 향후 도서관 업무의 다양성과 다변화에 맞춰 도서관 관리·운영 기관의 범위 확대

2.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제외 대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구 출자·출연기관으로 확대(안 제5조 제2항)

3. 의견제출

○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문화관광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, 6층(홍인동, 충무아트센터), 문의전화 : 3396-4643, FAX: 3396-8610, 전자우편 : gigusarang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첨부 1.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 출자·출연 기관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관리·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「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5조(관리·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 출자·출연기관이 ----- ----- -----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